

의안번호	2210337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8.1.
추계번호	25D27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 검사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0억 4,100만원, 2030년 131억 5,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47억 8,600만원(연평균 129억 5,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보수	6,561	6,718	6,880	7,045	7,214	34,418	6,884
기관부담금	857	882	908	936	965	4,548	910
기본경비	3,414	3,496	3,580	3,666	3,754	17,911	3,582
사업비	1,106	1,133	1,160	1,188	1,216	5,803	1,161
자산취득비	423	—	—	—	—	423	85
수사처 검사 적격심사	—	—	1	—	2	3	1
사무실 공간 개선	1,680					1,680	336
합 계	14,041	12,229	12,529	12,835	13,151	64,786	12,9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수사처검사) 제2항	수사처 검사의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의무규정
2	안 제10조(수사처수사관) 제2항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을 현행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	의무규정
3	안 제11조(그 밖의 직원) 제2항	수사처 행정직원의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의무규정
4	안 제14조의2(수사처 검사 적격심사) 제1항 신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7년 마다 적격심사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수사처검사) 제2항	○	-
2	안 제10조(수사처수사관) 제2항	○	-
3	안 제11조(그 밖의 직원) 제2항	○	-
4	안 제14조의2(수사처검사 적격 심사) 제1항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 수사처의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 수사처의 직급별 인력 구성비에 따라 규모를 추정하여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사무실 개선공사비용 및 수사처 검사 적격심사를 위한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구분하여 추계함
- 안 제8조제2항¹⁾은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최대 15명(25명 → 40명 이내), 안 제10조제2항²⁾은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을 최대 40명(40명 → 80명 이내), 제11조제2항³⁾은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최대 30명(20명 → 50명 이내) 증원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규모는 최대 85명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8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그 밖의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표 2]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규모(최대)

(단위: 명)

구분		현행(A)	개정안(B)	증원규모(C=B-A)
검사		25	40	15
직원	수사관	40	80	40
	그 밖의 직원	20	50	30
소계		85	170	85

주: 인력증원 규모는 개정안에 따른 최대 정원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현행 수사처의 정원, 직무·직급별 정원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급별 정원 :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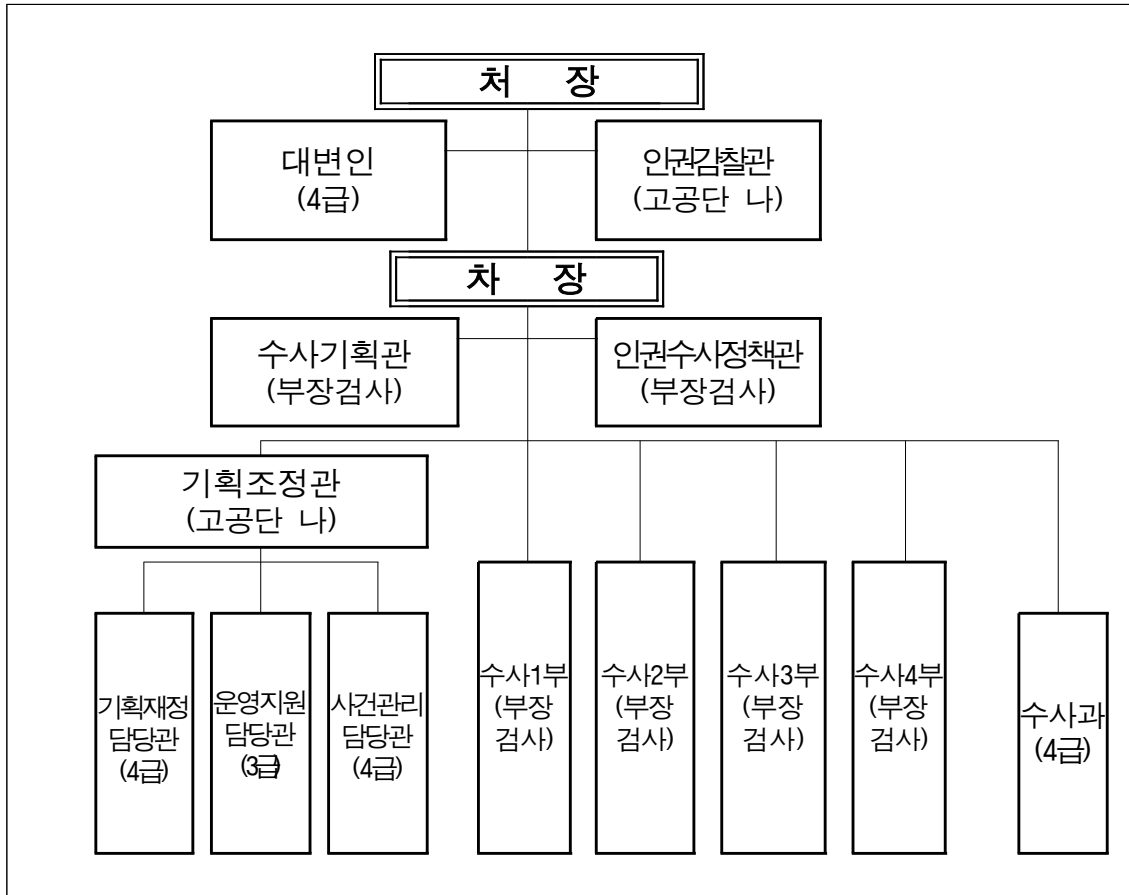
(단위:명)

구분	직급		정원(명)	
수사관	정무직		1	
	검사		23	
	4급		6	
	5급		13	
	6급		18	
그 밖의 직원	7급		3	
	고위공무원단 가급		3	
	고위공무원단 나급			
	3급		1	
	4급		4	
	5급		3	
	6급		4	
	7급		3	
	기타 직급	전문경력관 나군		1
		별정직 5급		1
		연구사		1
계		85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조직도에 따르면, 위 직급별 정원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수사처장, 고위공무원단 가급은 수사처 차장, 고위공무원단 나급은 기획조정관과 인권감찰관, 행정직 3급은 운영지원담당관, 행정직 4급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과장이므로 이들 직급은 증원되지 않고, 그 외 직급에서만 현 직급별 인원 비율에 따라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표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도: 2025년 7월 1일 기준



- 현행 수사처 인원 중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행정직 3급 및 행정직 4급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직무·직급별 구성 비율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현행 수사처 정원(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급, 4급 제외) 직무·직급별 배분
(단위: 명)

구분	4급	5급	6급	7급	전문경력 관 나급	별정직 5급	연구사	합계
수사관	6 (15%)	13 (33%)	18 (45%)	3 (8%)	-	-	-	40 (100%)
그 밖의 직원	-	3 (23%)	4 (31%)	3 (23%)	1 (8%)	1 (8%)	1 (8%)	13 (1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현행 수사처의 직무·직급별 분포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수사처 증원인력을 직무·직급별로 배분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수사처 직원 증원인력(85명) 직무·직급별 배분(안)

(단위: 명)

구분	4급	5급	6급	7급	전문경력 관 나급	별정직 5급	연구사	합계
수사관	6 (15%)	13 (33%)	18 (45%)	3 (8%)	—	—	—	40 (100%)
그 밖의 직원	—	7 (23%)	9 (31%)	7 (23%)	2 (8%)	2 (8%)	2 (8%)	30 (1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 수사처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현행 수사처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및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중을 적용하되, 수사처 업무 정보화(1031)사업을 제외한 사업비를 적용

- 수사처는 2025~2026년 2년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이 수사처 업무 정보화 사업에 포함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수사처 인력 증원과 무관하게 소요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서 제외함
- 이를 적용한 수사처의 인건비·기본경비·사업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7] 수사처 소관 인건비·기본경비·사업비 현황: 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대비 비중	주요내역	합계
인건비	—	(인건비) 8,659	14,625
기본경비	52.04%	(기본경비) 4,506	
사업비	16.86%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공판활동) 1,460	
수사처 업무 정보화	122.91%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0,643	10,643

자료: 고위공직자수사처 2025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수사처 정원 확대에 따른 보수와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임금 평균상승률, 신규채용 직원의 기관부담금 요율 및 자산취득비 단가⁴⁾를 적용해 추정하며, 사무공간은 국가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되 사무실 개선공사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현행 검사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되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 수사처 검사의 적격심사 도래 시마다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공포한 날부터 3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수

- 개정안에 따른 보수는 신규채용 수사처 직원(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 인원수에 직급별 1인당 평균 연봉액을 곱하여 산출함
- 2025년 기준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급별 1인당 연봉액은 다음 표와 같음

4)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2025.4. 기준)

(단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자산취득비 단가(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직급별 연봉액: 2025년

(단위:천원)

구분	직급	연봉액(수당 포함)
정무직(차관급)		159,203
검사		112,892
수사관	4급	109,815
	5급	71,489
	6급	59,888
	7급	53,252
그 밖의 직원	고위공무원단	146,859
	3급	115,596
	4급	109,815
	5급	85,696
	6급	58,136
	7급	50,584
	전문경력관 나급	61,091
	별정직 5급	82,355
	연구사	61,898

주: 연봉액은 연봉(연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합산한 것임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수사처 직원(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9] 수사처 정원 확대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검사	1,734	1,776	1,818	1,862	1,907	9,096
	수사관	2,894	2,963	3,034	3,107	3,182	15,180
	그 밖의 직원	1,933	1,980	2,027	2,076	2,126	10,141
	소계	6,561	6,718	6,880	7,045	7,214	34,4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관부담금

-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 효율을 적용하면 기관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0] 수사처 정원 확대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관 부담금	보수	6,561	6,718	6,880	7,045	7,214	34,418
	기관부담금 효율	13.07%	13.13%	13.19%	13.29%	13.38%	-
	소계	857	882	908	936	965	4,5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기본경비

- 개정안에 따른 기본경비는 보수에 2025년 수사처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52.04%)을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수사처 직원(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의 기본경비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11] 수사처 정원 확대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 경비	보수	6,561	6,718	6,880	7,045	7,214	34,418
	기본경비 비중	52.04%	52.04%	52.04%	52.04%	52.04%	-
	소계	3,414	3,496	3,580	3,666	3,754	17,9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사업비

- 개정안에 따른 사업비는 보수에 2025년 수사처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16.86%)을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수사처 직원(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의 사업비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12] 수사처 정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사업비	보수	6,561	6,718	6,880	7,045	7,214	34,418
	사업비 비중	16.86%	16.86%	16.86%	16.86%	16.86%	—
	소계	1,106	1,133	1,160	1,188	1,216	5,8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자산취득비

- 개정안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증원되는 수사처 인력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수사처 직원(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의 자산취득비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13] 수사처 정원 확대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산취득비	증원 인원	85	—	—	—	—	—
	단가(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
	소계	423	—	—	—	—	4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수사처 검사 적격심사(안 제14조의2제1항)

- 개정안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수사처 검사(처장, 차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 참석 수당임
- (민간위원의 수 및 수당) 현행과 같이 민간위원 총 5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함
 - 2024년 수사처 검사의 연임 심의 시, 위원 수당은 총 200만원[2회 x 민간위원 5명 x (1인당 수당 15만원+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을 지급함
 - (회의 개최 횟수) 적격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는 2028년에 1회, 2030년에 2회로 하여 총 3회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추계기간 동안 총 11명으로 예상되고, 같은 해 임용된 검사들의 적격심사는 같은 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되, 2023년 임용된 검사들은 2030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심사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14] 수사처 재직 검사 임용일자(처·차장 제외)

연번	재직검사	임용일자
1	A	2021.10.28
2	B	2021.10.28
3	C	2021.10.28
4	D	2021.10.28
5	E	2023.2.24
6	F	2023.2.24
7	G	2023.2.24
8	H	2023.6.21
9	I	2023.9.27
10	J	2023.9.27
11	K	2023.10.24.
12	L	2024.7.22.

주: L검사는 추계기간 중에 임명 후 7년이 도래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수사처 검사의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00만원으로 예상됨

[표 15] 수사처 검사 적격심사로 인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민간위원 수(A, 명)	-	-	5	-	5	-
민간위원 수당(B, 만원)	-	-	20	-	20	-
회의 개최 횟수(C, 회)	-	-	1	-	2	-
합 계(AxBxC, 백만원)	-	-	1	-	2	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사무실 개선공사 비용

- 수사처 직원 증원에 따라 기존 과천정부종합청사의 사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개선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무실 개선공사 비용은 2026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되, 수사처 공사실적 단가⁵⁾에 증원인력(검사 15명, 수사관 40명, 그 밖의 직원 30명)의 사무공간 소요면적을 곱하면, 15억 1,000만원(2024년 기준)이고, 동 금액에 건설공사비지수(연평균 5.46%⁶⁾)을 반영하면 16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증원인력 사무공간 소요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4급이하 일반직원 면적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에 따라 검사실 면적 50㎡를 적용하여 1,240㎡로 산출됨

5) 2024~2025년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사실적 단가

구분	공사비 단가(백만원)	산출근거
건축공사	1㎡당 0.132	2024~2025년 기관추진 공사실적 단가적용(경비동 사무공간조성, 사무공간 재배치, 후생동 콜센터 방음시설 등)
전기공사	1㎡당 0.122	
통신·소방공사	1㎡당 0.176	
보안공사	1개소당 2.035	
조명·공조공사	1㎡ 당 0.447	
방음공사	1㎡당 0.45	
바닥공사	1㎡당 0.171	
냉난방공사	1㎡당 0.191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비지수: 2020~2025

(건설공사비지수: 매년 2월 기준, 2020년=100)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거주용건물	100.00	104.67	120.36	126.90	129.77	130.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검사, 수사관 및 행정직원 증원에 따른 조직 변화와 직급별 인원수를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검사를 제외한 증원인원 전원이 4급이하 일반직원인 것으로 가정

[표 16] 개정안에 따른 사무실 공간 개선 비용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공사실적에 따른 비용	2026년 소요비용 추정
건축공사	163.7	182.1
전기공사	151.3	168.3
통신·소방공사	218.2	242.7
보안공사	30.5	33.9
조명·공조공사	554.3	616.5
방음공사	37.0	41.2
바닥공사	212.0	235.8
냉난방공사	143.3	159.4
합계	1,510.3	1,679.8

주: 2026년 1회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사.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수사처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 검사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0억 4,100만원, 2030년 131억 5,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47억 8,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6,561	6,718	6,880	7,045	7,214	34,418
기관부담금	857	882	908	936	965	4,548
기본경비	3,414	3,496	3,580	3,666	3,754	17,911
사업비	1,106	1,133	1,160	1,188	1,216	5,803
자산취득비	423	—	—	—	—	423
수사처 검사 적격심사	—	—	1	—	2	3
사무실 공간 개선	1,680					1,680
합 계	14,041	12,229	12,529	12,835	13,151	64,7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 수사처의 인력 구성, 직급별 연봉액,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수사처 정원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수사처의 직급별 인원, 기본경비 및 사업비 비중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